■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[별지 제10호서식]

사전컨설팅 이행결과 통보서

건 명	
사전컨설팅 신청개요	
감사관 (또는 감사원)의 사전컨설팅 의견서 요지	
이행결과	※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사유
증빙자료	

「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」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합니다.

작성자 기관(부서)명 직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 감사관 귀하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)